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6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6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9. 23.
- (3) 회 부 일 : 2024. 9.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그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되, ②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
4. ~ 22. (생략)	4. ~ 2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에서는 이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을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인력,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므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그 수가 22만여 명(참고로, 활동 간호사의 수는 27만여 명)으로 신고의무자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1: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

록자 및 활동자 현황).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진료소’의 의료인(간호사 1,852명으로 파악)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바,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

둘째,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 대상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경우는 「지역보건법」상 「의료법」 특례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해석할 수 없음.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90조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셋째, 시행일만으로는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동 조항의 이전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였으며, ② ‘이 법 시행 후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둔 바 있음.

「장애인복지법」²⁾

부 칙 <법률 제13366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제59조의4제1항, 제59조의5, 제59조의9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대상에 추가하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172호)

2)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장애인학대의 신고대상 기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로 확대하였음.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정수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킬 필요성에 동의함.

- 다만,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업무하는 의료인은 배제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부분”은 기존 유지 필요

나. 대한의사협회

□ 현행법으로도 의료기관 종사인력이 학대신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까지 신고 의무 대상자로 새로 포함시키는 것은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가 존재함.
- 아울러,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의료기관의 조사과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대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면허등록자 및 활동자 현황〉

(‘24.6월말 기준, 단위: 명)

연 번	관계 법령	직종		면허 등록자 ¹⁾	활동인력						
					계	의료 기관 ²⁾	보건기관 ³⁾				약국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 진료소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계	2,551,164	906,389	856,476	631	6,763	4,808	1,863	35,848	
1	의료법	의료인	의 사	140,459	114,104	112,901	138	538	527	-	-
2			치과의사	35,034	28,923	28,428	34	256	205	-	-
3			한의사	28,945	23,535	22,613	22	240	660	-	-
4			간호사	526,622	277,263	271,843	218	2,653	695	1,852	2
5			조산사	8,098	61	60	-	1	-	-	-
6		간호조무사		901,310	223,126	220,247	76	1,082	1,711	10	-
7	약사법	약사		78,463	42,118	7,054	6	17	1	-	35,040
8		한약사		3,264	1,394	589	-	-	-	-	805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 기사	임상병리사	73,159	29,484	28,710	40	689	45	-	-
10			방사선사	56,588	33,476	32,962	43	433	38	-	-
11			물리치료사	93,263	50,800	50,174	20	362	244	-	-
12			작업치료사	27,451	9,149	9,141	-	2	6	-	-
13			치과기공사	39,504	3,011	3,009	-	2	-	-	-
14			치과위생사	106,254	48,953	47,827	23	433	669	1	-
1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3,043	5,674	5,653	7	12	1	-	1
16		안경사		49,901	2,438	2,437	-	1	-	-	-
17	공중위생 관리법	위생사		110,553	0	-	-	-	-	-	-
18	국민영양 관리법	영양사		175,910	8,677	8,625	4	42	6	-	-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1급) 26,778	4,203	4,203	-	-	-	-	-
	(2급) 23,318										
20	국민건강 증진법	보건교육사 ⁴⁾		13,247	0	-	-	-	-	-	-

1) 보건복지부 면허발급시스템(사망자 제외)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함

* 의원급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3) 「지역보건법」의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인력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신고한 현황)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 「의료기사법」의 의료기사, 응급의료법의 응급구조사, 119법에 따른 119구급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신고의무자에 이미 포함. 단, 「의료기사법」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응급구조사는 다수가 소방청(119구급대원 포함), 민간이송업체(구급차 이송업)에 근무

자료: 보건복지부